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2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. ~ 1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2022년 5월 20일”을 “2022년 8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5 1. 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5월 20일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8월 31일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규제자유특구기확단)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에 따라 <u>2022년 5월 2</u> <u>0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으 로 규제자유특구기확단을 둔다. ② ~ ⑦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	제30조(규제자유특구기확단) ① -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8월 31</u> <u>일</u> -----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■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5]

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30조제4항, 제30조의2제4항 및 제30조의3제4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1 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8월 31일)	1. <u>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5월 20일)</u>	1. <u>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8월 31일)</u>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4